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9. 28 선고 2020가단33412 판결 [계약금반환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정

담당변호사 조지영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8. 31.

판 결 선 고 2021. 9. 2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9,006,385원 및 그중 38,595,267원에 대하여 2021. 1. 13.부터 2021. 3. 11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춘수

별지